



[2014.2.4.] [48 , 2014.2.4.,]

() 044 - 203 - 4534

- 1 () 「 」
- 2 () 「 」 (" ")
 25 4 1 1 「 」 36 1
 1 () .< [2013.3.23.>](#)
 25 4 4 2 .
- 3 () 「 」 (" ")
 " ") 22 1 35 2 6 (" ")
) 「 」, 「 」, 「 」 「 」 .< [2012.4.17., 2013.3.23.>](#)
 70 가
 1 .< [2013.3.23.>](#)
- 4 (가) 34 1 가 3
 , 34 4 가 4 .
 35 2 1 가 22
 1 , 5 가 가
 .< [2013.3.23.>](#)
- 5 (가) 35 1 가 가
 6 가 가 가
 36 1 「 」 .< [2013.3.23.>](#)
 35 2 가 가
 . 「 」 36
 1 .< [2013.3.23.>](#)
1. . : ()
 2. 가 : ()
 3. 가 : ()
- 가. () 「 」 33) 가 2 가 가
 가 가 가 , 가
 .< [2013.3.23.>](#)

.< 2013.3.23.>

- 1. 가
- 2.

6 () 35 2 2 2 " ,
 " .< 2012.4.17., 2013.3.23.>

- 1. (35
 2 2 3) 5
 가. 3
 . 가 3
 . 가 3
 . , 3
 . , ,
- 2. 4 2
- 3. 2 8 가

1 , .<
 2013.3.23.>

7 () 35 2 7 1 .< 2012.4.17.>

8 () 35 7 2 2 . 2
 , , 2
 2 1 . , 6
 .< 2013.3.23.>

9 () 35 7 가 35 8
 8 .

10 () 6 2014 1
 1 3 (3 1 1)

[2014.2.4.]

< 48 ,2014.2.4.>

[별표 1]

수수료의 기준(제7조 관련)

항 목	내 용
기본료 (지식재산권 유지 수수료)	○ 지식재산권 수수료(제3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) ○ 연차등록 관리 비용 ○ 기본신탁 관리 비용
보호관리 수수료	○ 침해 모니터링 비용(상시) ○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
* 이전 수수료	○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
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	○ 라이선싱 관리 및 현장 실사(實査)에 따른 비용
마케팅 대행 수수료	○ 마케팅 착수금 ○ 마케팅 착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적용
기술평가 수수료	○ 기술신탁 선별평가 비용 ○ 양도 시 기술가치 평가비

* 이전 수수료[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(先納) 시]

등급	거래 규모(기술이전 금액)	수수료 비율
1	1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
2	1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
3	3억원 초과	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

※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

* 이전 수수료(마케팅 대행 수수료 미납 시)

등급	거래 규모(기술이전 금액)	수수료 비율
1	1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7.5퍼센트
2	1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
3	3억원 초과	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

※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

행정처분의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행정처분의 내용
1.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	법 제35조의7제1항제4호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
2.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	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
3.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등의 목록을 비치·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의7제1항제5호	30일 미만의 업무정지
4.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5조의7제1항제6호	30일 미만의 업무정지
5.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의7제1항제7호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
6.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	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

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

(알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 일
신청인	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전화번호	팩스번호

기술지주회사의 개요

	성명(기관명)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
출자자			
	합계	100.0	
기술지주회사	회사명		
	주소		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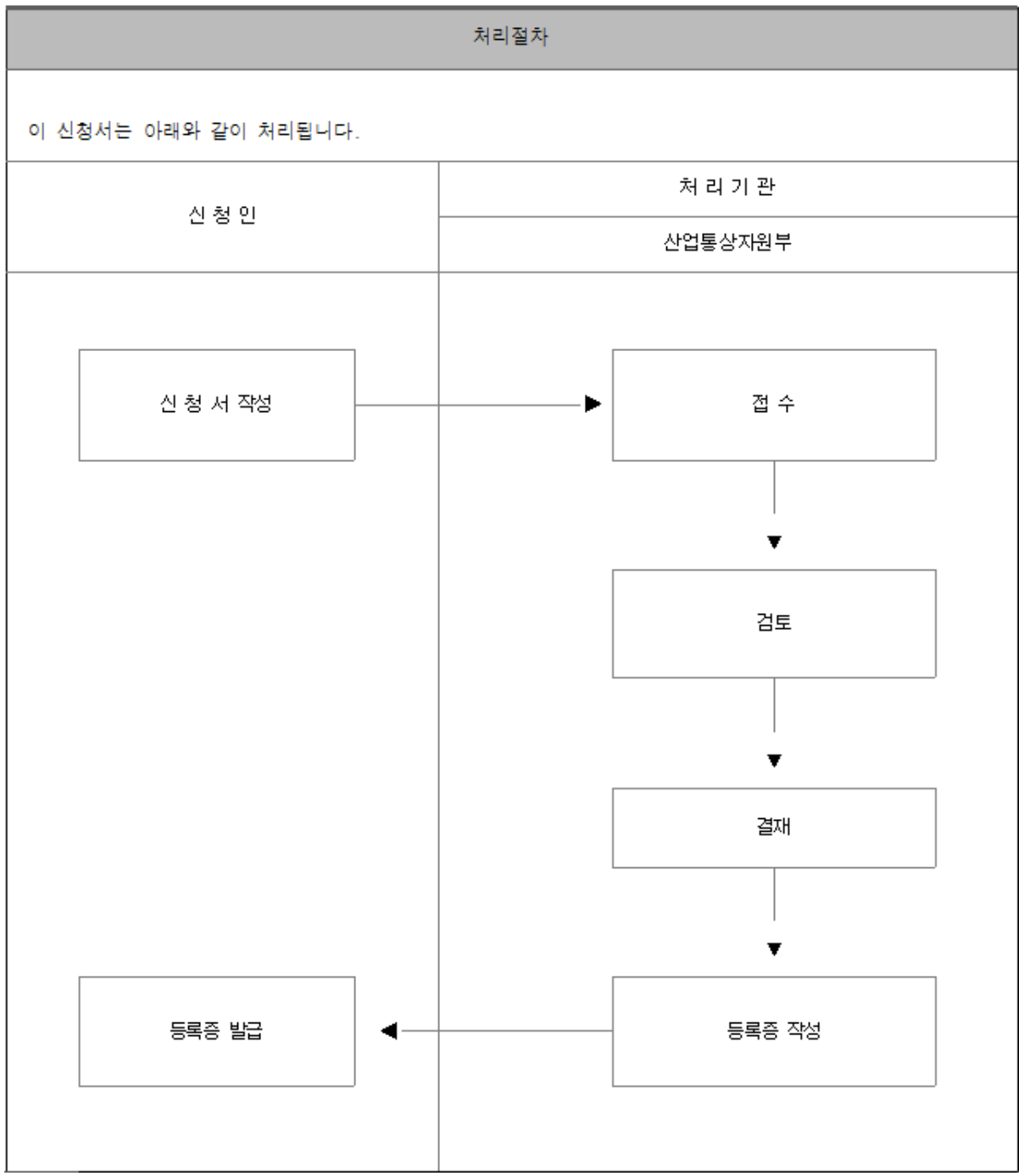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. 설립 목적 나.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. 사업계획서(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2. 임원의 이력서 1부	수수료 없음
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	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 (재활용품)]



등록번호 제 호

기술지주회사 등록증

1. 법인 명칭
2. 법인등록번호
3. 사업자등록번호
4. 대표자의 성명
5. 대표자의 생년월일
6. 주소
7. 전화번호
8. 팩스번호
9. 출자기관

기관명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
합계	100.0	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보존용지 120g/㎡]

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

(알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 일
신청인	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
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			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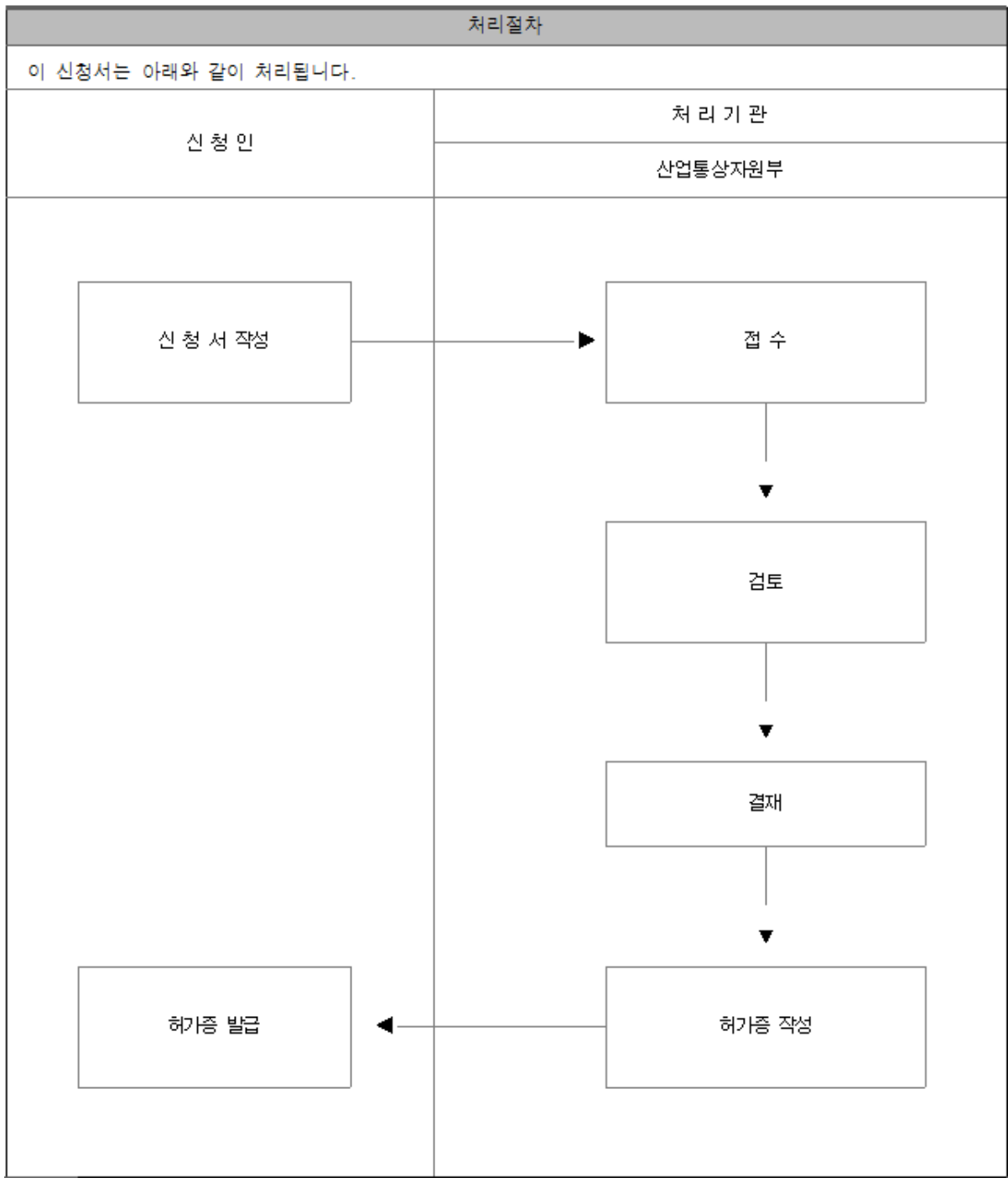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.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.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. 신청 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. 정관 또는 규약 6.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. 재무제표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	수수료 10,000원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	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 (재활용품)]



허가번호 제 호

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

1. 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
2. 법인등록번호
3. 대표자의 성명
4. 대표자의 생년월일
5. 주소
6. 전화번호
7. 팩스번호
8. 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
9. 허가조건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

[별지 제5호서식]

기 술 신 탁 관 리 업 허 가 증 관 리 대 장						
일련 번호	허가일	법인 명칭	대표자	소재지	수령인	비 고 (발급, 재발급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
신청내용	변경 전	변경 후	
신청사유			
허가증분실 사유	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	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2.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)	
확인사항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 (재활용품)]

기술신탁관리업 [] 휴업 통보서 [] 폐업

*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알 쪽)

접수번호	정수 업일	처리기간 즉시
통보인	법인·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전화번호	팩스번호
통보내용	휴업일·폐업일	년 월 일
	(휴업·폐업)사유	
허가증분실 사유	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 합니다.	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 휴업 · [] 폐업)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만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2.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 (재활용품)]

[별지 제8호서식]

행정 처분 관 리 대 장								
일련 번호	처분일시	법인 명칭 (대표자)	주 소 (상호)	위반 내용		처분 내용	과징금 납부기한	과징금 납부일
				위반일	위반 행위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